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아래 지상 건축물의 건축주(소유자)에게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촉구”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9년 8월 2일

용인시장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2. 공고대상

연번	대지위치	건축주		처분원인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비고 (반송사유)
		성명	주소			
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10, 505호(구갈동)	박*교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로 *****	불법용도 변 경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폐문부재

3.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4. 공고기간 : 2019. 8. 2. ~ 2019. 8. 16.
5. 처분원인 :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6. 기타사항
 - 2019. 8. 16.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 되오니 해당 기일 내에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건축과(☎031-324-2396, fax)031-324-24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의견제출서 1부.

<별첨 1>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용인시 건축행정과-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